

예산총칙

2019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761,835,238 | 22,855,057 |
| 일반회계 | 719,868,379 | 21,596,051 |
| 특별회계 | 41,966,859 | 1,259,006 |
| 기타특별회계 | 41,966,859 | 1,259,006 |
| 의료급여기금 | 1,461,636 | 43,849 |
| 주차장 | 39,395,535 | 1,181,866 |
| 기반시설 | 183,321 | 5,500 |
| 지하수관리 | 913,578 | 27,407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| 12,789 | 384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818,196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, 시비보조금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포함)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

※의존재원 표시

국비→국,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→균, 기금→기, 시비→시, 특별교부세→교,
특별조정교부금→특